

의안번호	2212980
의 퇴 인	이성윤의원
회 답 일	2025.10.23.
추계번호	25D4633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4조의2 (조세의 감면)	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 등과 투자진흥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2	안 제74조의3 (부담금 등의 감면)	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개발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부담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4조의2 (조세의 감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4조의3 (부담금 등의 감면)	

2. 상세 사유

□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(안 제74조의2 및 안 제74조의3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투자자등에 대한 조세와 개발부담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- 한편,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근거는 현행법에 규정¹⁾되어

1)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73조(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)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

있으나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된 바는 없음

- 따라서 투자진흥지구의 사업 및 투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예상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대상, 기준, 감면율 등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

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(이하 "투자진흥지구"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1. 투자진흥지구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2.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
3.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, 투자이행기간,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
4.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.

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·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·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